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1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학영·정태호·임광현

임호선 • 이정문 • 진선미

정준호ㆍ허 영ㆍ민홍철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여야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5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	
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위원의 3분의</u>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
	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국가기본계획을 <u>수립·변경하</u>	<u>수립·변경하</u>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u>고자 할 때에는보고</u>
<u>보고하여야</u> 한다. 다만, 대통령	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